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26회 제2차 정례회

# 검 토 보 고 서

2018. 11. 30. (금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	구청장



**행정건설위원회**  
(전문위원 유준상)

#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읍부즈만 위촉 동의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## 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마포구청장
- 제안일 : 2018. 11. 19.
- 회부일 : 2018. 11. 20. (의안번호 :18 - 107)

## 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항에 따라 마포구 읍부즈만을 공개모집·선정하고, 마포구의회에 위촉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것임..

## 3. 읍부즈만 선정자(위촉 동의 대상자)

연번	성명(성별)	연령	최종학력 및 주요경력
1	길기현(남)	만59세	·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 · SLK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· LH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위원
2	박영철(남)	만63세	·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·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상담안내과 위원 · 前 마포구 용강동장, 조사팀장, 계약팀장
3	배수진(여)	만42세	· 성균관대학교 법학 ·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·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

#### 4. 관계 법령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 (ombudsman 구성 등)

#### 5. 검토의견

- 동 위촉 동의안은 2014. 4. 24.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 ombudsman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. 11. 6. ~ 11. 9.까지 마포구 ombudsman을 공개모집한 결과,
- 8명이 지원하여 2018. 11. 13. 서울특별시 마포구 ombudsman 선정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심사 결과 3명의 ombudsman이 선정되어 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정과정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,
- 다만, 1기 ombudsman이 4년여 동안 200여 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시정권고, 의견표명, 조정, 각하, 소송취하 등 한정적 시간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을 가만할 때,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축적된 경험 등이 누락없이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하여 2기 ombudsman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